의안번호	2200926
의 뢰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4. 9. 4.
추계번호	24B14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5일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난임치료휴가자 수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726억원~913억원(연평균 145억원~183억원)으로 추계

○ 본 추계서에서의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하였으며, 시나리오2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예산액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난임치료휴가(시나리오1)	136	140	145	150	155	726	145
난임치료휴가(시나리오2)	180	181	183	184	185	913	18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모든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1항)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2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1)]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동 개정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개정안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4.7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2.9	3.4	3.2	3.2	3.2	3.2	3.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75조, 안 제76조제1항제3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난임치료에 관한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추계하며,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하고, 시나리오2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예산액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산출함

❑ 본 추계의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 출산율,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행태 및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시나리오 1) 국가공무원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에 근거한 추가재정소요

❑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한 추가재정소요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난임치료휴가가 유급휴가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가 확대될 수 있지만,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의 사용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함

- 국가공무원의 근로환경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과 고용보험가입자의 근로환경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을 구분하여 난임치료 시술 유형에 따라 휴가를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시술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규정하고 있음[2)]

❑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난임치료휴가자 수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적용하여 산출

○ (난임치료 휴가자 수) 본 추계서에서 난임치료휴가자 수는 고용보험가입자 수에 2023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2] 고용보험가입자 수: 2019~2023년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남성	7,874	7,962	8,158	8,318	8,481	1.87%
여성	5,990	6,150	6,392	6,580	6,718	2.91%

자료: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최근 5년간 고용보험가입자 수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3] 고용보험가입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고용보험 가입자 수	남성	8,967	9,135	9,306	9,480	9,658
	여성	7,322	7,536	7,755	7,981	8,213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고용보험가입자 수에 2023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2)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표 4] 국가공무원 난임치료휴가 사용 현황

(단위: 명, 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여성	현원(A)	71,104	73,823	76,687	80,228	82,964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B)	227	248	330	331	400
	현원 대비 사용자 수(C=B/A)	0.32%	0.34%	0.43%	0.41%	0.48%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D)	393	444	598	1,218	1,692
	1인당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E=D/B)	1.7	1.8	1.8	3.7	4.2
남성	현원(F)	218,149	221,580	221,718	224,964	226,282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G)	200	245	305	449	514
	현원 대비 사용자 수(H=G/F)	0.09%	0.11%	0.14%	0.20%	0.23%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I)	297	432	422	614	805
	1인당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J=I/G)	1.5	1.8	1.4	1.4	1.6

주: 군인·군무원, 교원 등 제외
자료: 인사혁신처

[표 5]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	남성	20	21	21	22	22
	여성	35	36	37	38	40
	합계	56	57	59	60	62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수급자 수의 비중은 전체 출산휴가급여 지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을 준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출산휴가급여 지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매년 최근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비율의 평균 증가폭(0.7%) 만큼 매년 증가한다는 가정을 통해 산출
-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현황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남성의 고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6]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	56	57	59	60	62
우선지원대상기업	34	35	36	37	38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단가) 2024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기간) 난임치료휴가의 지급기간은 5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3)]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36억원, 2030년 155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7]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추가재정소요	136	140	145	150	15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모든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나리오 2) 2024년 예산 산출 자료에 근거한 추가재정소요

❑ 시나리오2는 2024년 예산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장래에 발생할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대상자 수는 불임치료 환자 수에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중,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가입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 난임치료휴가 실제 활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

- 난임치료환자 수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불임치료환자 수를 토대로 산출

[표 8] 난임치료휴가 관련 통계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난임치료 환자 수(A)		230,802	228,382	252,288	243,347	243,212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율(B)		79.3	79.4	79.8	79.9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C)		70.9	72.6	75.2	77.0	77.0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D)		56.6	56.2	56.4	57.6	59.5
난임치료 휴가 사용률	난임치료대상자 비율(E)	-	-	8.6	8.6	-
	실제 난임치료휴가 활용실적(F)	-	-	4.5	4.3	-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1.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
3. 여성정책연구원,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3

- 추계기간 동안 난임치료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환자 수의 평균값을 토대로 산출
-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중은 2022년 실적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3년 실적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비율의 평균 증가폭 만큼 매년 증가한다는 가정을 통해 산출
- 난임치료휴가 사용 예상률은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를 준용하여 산출

[표 9]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난임치료 환자 수(A)	239,606	239,606	239,606	239,606	239,606
취업자 중 자영업이 아닌 자의 비율(B)	79.9%	79.9%	79.9%	79.9%	79.9%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C)	77.0%	77.0%	77.0%	77.0%	77.0%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율(D)	60.8%	61.2%	61.6%	62.1%	62.5%
난임치료 휴가사용률(E)	50.0%	50.0%	50.0%	50.0%	50.0%
우선지원대상 기업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 (F=A×B×C×D×E, 천명)	45	45	45	46	46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1.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
3. 여성정책연구원,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3

○ (지급단가) 2024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기간) 난임치료휴가의 지급기간은 5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4)]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80억원, 2030년 185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10]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추가재정소요	180	181	183	184	18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모든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Ⅳ. 부대의견

-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비율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2는 2024년 예산 산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로, 난임치료 환자 규모 및 고용보험가입률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